

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(변경)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납세자	성명(법인명)	주민(법인, 외국인)등록번호	
	상호(법인인 경우 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영업소)	전화번호 (휴대전화:)	
구분	[] 계좌신고 [] 계좌변경		
	당초	변경	
금융회사			
계좌번호			
변경사유			

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라 지급계좌를 신고(변경신고)하오니 본인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위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임장

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"위임받은 자"에게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(변경신고)를 위임합니다.

위임자(납세자) 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자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위임 받은 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위임자와의 관계
	주소	전화번호	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	

유의사항

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.